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원칙 도입 및 공공관리 강화 등 〉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846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국가와 사업자의 폐기물 관리·처리 의무 강화	2
2.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원칙 도입 및 반입협력금 징수	6
3. 폐기물처리시설 확보·정비 기본계획 수립	16
4.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분리 및 폐기물 중간·최종 처분업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	20
※ 참고자료 1: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연간 발생량 및 처리업체 현황	34
※ 참고자료 2: 소각·매립시설 인·허가 절차	35
※ 참고자료 3: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목차	36

I. 제안경위

2025년 7월 30일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7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가 대부분 민간업체들에게 맡겨져 있어서 폐기물처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과 매립·소각(소각에 준하는 유해 재활용 포함)을 구분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장폐기물 매립·소각시설부터 사업주체를 최소한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주체로 제한하며, 생활폐기물에 적용되는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사업장폐기물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이에 환경부로 하여금 5년을 주기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와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중간처분(소각)과 최종처분(매립)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재활용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폐기물 처리의 안전성·공공성·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3항,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4조의2·제25조의5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가와 사업자의 폐기물 관리·처리 의무 강화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현행 지정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대한 국가의 책무 범위를 사업장폐기물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u>최소화</u> 하여야 한다.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 ----- ----- -----최소화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u>지정폐기물</u> 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u>지정폐기물</u> 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 <u>사업장폐기물</u> ----- ----- <u>사업장폐기물</u>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사업자·오염을 일으킨 자·일반 국민이 준수해야 할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는 책무 조항을 두고 있음.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및 국가·지자체의 책무]

구 분	주요 내용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 할 필요 - 누구든지 폐기물 배출 시 사전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 - 폐기물은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될 필요 -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복원 책임을 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 지자체는 관할구역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 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고 적정처리 조치 마련 - 국가의 지자체 기술적재정적 지원 및 시도 간 폐기물 처리사업 조정의무 부여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국가가 사업장폐기물 전반에 대해 적정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폐기물이 환경보전과 국민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적정하게 처리할 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일견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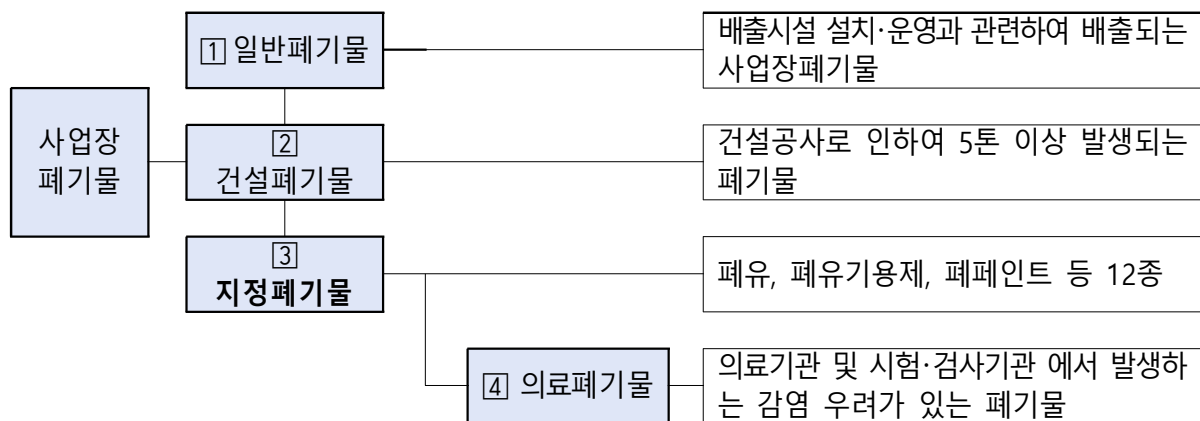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 번째로, 관할 구역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상황 확인, 적정처리 감독 등에 대한 책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¹⁾에 있으며,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1)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²⁾에 대한 관리책무는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고려할 때, 사업장폐기물 전체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허가 권한³⁾과의 충돌 및 중복 행정으로 인한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적·재정적 비효율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사업장폐기물 분류체계]



두 번째로,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처리원칙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적합성 확인(제25조의3), 과징금처분(제28조),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제39조의2),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제39조의3),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제40조), 폐기물처리 신고(제46조) 등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사업장폐기물 중 일반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4)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하고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일차적인 처리 의무⁵⁾가 있으며, 국가는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 우려가 높은 지정폐기물에 대해 강화된 관리를 하는 현행법 체계를 고려할 때, 사업장폐기물 적정 처리에 대한 조치 의무까지 모두 국가가 맡는 것은 오염자 책임 원칙⁶⁾에도 어긋난다고 보여지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도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사업자의 협력이 필요한 바 사업자에 대한 협력 의무 신설은 타당하나, 국가의 관리책무를 사업장폐기물로 확대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와 상충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업종·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원칙 도입 및 반입협력금 징수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 기본원칙에 폐기물은 최대한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하여야 함을 명시하면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처리 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사업장폐기물을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2제7항, 제5조의3, 제5조의4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 ⑥ (생략) <u><신설></u> <u><신설></u>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 ⑥ (생략) <u>⑦ 폐기물은 최대한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u> <u>제5조의3(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 처리)</u> <u>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을 세분화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u>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시·도지사</u>

현행	개정안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생략) <신설> ② 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와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사업장폐기물이 반출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의4(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이 반입되도록 협의한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여-----.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경우 기초지자체장이 관할 구역(발생지) 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⁷⁾, 생활폐기물이 발생지 외에서 처리되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초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기초지자체로부터 반입협력금⁸⁾을 징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 지원 등에 사용할

7)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8)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반입하여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제도 개요(2024.12.28. 시행)]

구분	주요내용
부과대상 생활폐기물	- (대상) 일반 종량제 및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 (처리시설) 공공시설 우선 시행
반입협력금 범위	- 상한액(소각 2.5만원/톤, 매립 1만원/톤, 음식물 1.5만원/톤)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
반입협력금 사용 용도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환경개선·주민지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개선 -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 연구·개발 - 그 밖에 홍보·교육 사업 등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오염자 책임 원칙에 따라 자가 또는 위탁처리⁹⁾ 하고 있으며 별도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은 발생지 외에서 주로 처리되고 있음.

실제로 2023년 기준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비율은 5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서울, 부산 등 특·광역시¹⁰⁾의 발생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② 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반입협력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개선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9)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지 처리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시·도별 폐기물 발생지 처리 현황(2023)]

(단위 : 천톤, %)

구분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발생지 처리율	발생량	발생지 처리율
전국	16,692	80.9	159,294	56.1
서울	2,894	42.4	10,787	3.6
부산	874	68.1	5,498	45.6
대구	755	68.0	3,530	19.9
인천	838	94.5	9,961	53.8
광주	456	95.0	1,880	42.1
대전	469	94.5	2,616	36.1
울산	358	100.0	7,298	50.8
세종	102	72.2	797	18.9
경기	4,097	89.2	32,386	67.0
강원	620	82.8	5,227	81.7
충북	639	98.7	6,982	63.0
충남	766	95.9	19,299	65.9
전북	620	92.3	6,374	75.7
전남	666	98.8	16,756	86.0
경북	964	98.2	17,940	82.0
경남	1,132	93.8	10,643	68.7
제주	443	100.0	1,320	93.5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에 사업장폐기물이 반입되는 기초지자체 주민들의 환경 피해 및 재산 손실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기초지자체 간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도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확히 하는 한편, 반입협력금의 징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개정안은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일반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생활폐기물에 적용되고 있던 발생지 처리 원칙 및 반입협력금 제도의 적용 대상을 사업장폐기물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기초지자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타 기초지자체로부터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임.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상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장에게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의무¹⁰⁾가 부과되고 있는 반면,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¹¹⁾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의무가 없는 기초지자체장에 대하여 사업장폐

10)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1)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¹²⁾, 지정폐기물¹³⁾ 등의 경우 종류와 성상(性狀)별 요구되는 처리기술 및 설비가 다양하여 전국 내 적정 처리 업체가 제한적¹⁴⁾인 상황에서,

사업장폐기물을 각 기초지자체 내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도입함에 따라 각 기초지자체별로 모든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시설을 그 폐기물의 성격에 맞게 각각 개별적으로 설치·운영하게 될 경우 폐기물 처리의 비효율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의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등 특·광역시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별로 건설·지정폐기물의 처리시설을 모두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음.

1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14) 예를 들어, 의료폐기물의 경우 전용 소각시설은 현재 경기도(연천군·용인시·포천시), 경상남도 진주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충청남도(논산시·천안시), 충청북도 진천군, 광주광역시 남구, 전라남도 장흥군, 경상북도(경산시·경주시·고령군) 총 13개 지역에서 운영중이며, 이 외의 기초지자체는 의료폐기물을 타 기초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하는 실정임.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2023)]

(단위: 개소)

구 분	지 역	총 계	수집·운반업	중간 처분업	최종 처분업	중간 재활용업	최종 재활용업	종합 재활용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총 계*		17,895	10,410	212	64	1,502	195	4,921	591
생활/ 사업장 폐기물	계	13,671	7,505	119	37	1,390	192	4,428	-
	서울	314	302	-	-	5	3	4	-
	부산	444	344	2	1	25	4	68	-
	대구	348	204	-	-	43	1	100	-
	인천	745	463	9	-	116	-	157	-
	광주	197	119	6	-	38	1	33	-
	대전	108	85	1	-	8	-	14	-
	울산	348	180	6	4	44	21	93	-
	세종	109	59	1	-	10	1	38	-
	경기	3871	2155	29	1	342	46	1298	-
	강원	512	344	4	-	55	4	105	-
	충북	978	529	9	6	70	21	343	-
	충남	1081	610	13	6	56	32	364	-
	전북	717	394	8	2	37	11	265	-
	전남	853	453	13	4	94	14	275	-
	경북	1630	666	12	10	159	10	773	-
	경남	1211	459	6	3	248	23	472	-
	제주	205	139	-	-	40	-	26	-
건설 폐기물	계	2,633	2,042	-	-	-	-	-	591
	서울	139	138	-	-	-	-	-	1
	부산	127	112	-	-	-	-	-	15
	대구	64	60	-	-	-	-	-	4
	인천	127	112	-	-	-	-	-	15
	광주	115	110	-	-	-	-	-	5
	대전	140	134	-	-	-	-	-	6
	울산	45	34	-	-	-	-	-	11
	세종	18	14	-	-	-	-	-	4
	경기	517	417	-	-	-	-	-	100
	강원	123	70	-	-	-	-	-	53
	충북	128	96	-	-	-	-	-	32
	충남	166	123	-	-	-	-	-	43
	전북	129	72	-	-	-	-	-	57
	전남	259	191	-	-	-	-	-	68
	경북	264	167	-	-	-	-	-	97
	경남	213	149	-	-	-	-	-	64
	제주	59	43	-	-	-	-	-	16

(단위: 개소)

지정 폐기물	계	1,591	863	93	27	112	3	493	-
	서울	28	28	-	-	-	-	-	-
	부산	49	33	3	-	-	-	13	-
	대구	37	24	3	-	1	-	9	-
	인천	95	60	4	-	2	-	29	-
	광주	30	21	1	-	3	1	4	-
	대전	30	25	2	-	-	-	3	-
	울산	82	34	6	5	3	-	34	-
	세종	6	3	-	-	1	-	2	-
	경기	433	236	26	1	37	-	133	-
	강원	25	21	1	-	2	-	1	-
	충북	105	46	7	4	8	1	39	-
	충남	137	69	8	5	11	-	44	-
	전북	58	30	6	1	1	-	20	-
	전남	69	39	5	4	7	-	14	-
	경북	193	83	13	6	6	1	84	-
	경남	205	104	8	1	29	-	63	-
	제주	9	7	-	-	1	-	1	-

주 1.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체 구분별 수량 산정 시, 생활/사업장일반/건설폐기물 및 사업장지정/의료폐기물 처리업체 간 중복 허용

주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최종처분업소는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건설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셋째, 개정안 제5조의4제2항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한 시·도지사
가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입협력금을
반출한 시·도지사로부터 징수할 것인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부터 징
수할 것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
진법」 15)에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사업장폐기물을 순환이용 할

1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
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매립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입협력금을 징수하는 경우 추가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폐기물처리비용의 상승 및 불법 폐기물 적치 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음.

[폐기물처분부담금 내용]

구분	주요내용			
산정식	폐기물처분량(kg) × 부과요율(원/kg) × 산정지수			
부과요율	폐기물 유형		요율	
			매립	소각
	사업장폐기물	불연성	10원/kg	-
		가연성	25원/kg	10원/kg
	건설폐기물		30원/kg	10원/kg
2025년도분 산정지수	1.3914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에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현재 정착된 사업장폐기물 배출-처리 체계 전반에 혼란¹⁶⁾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 적치, 지역간 갈등 등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나주시는 수도권과 대도시의 폐기물이 농촌에 전가되는 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등 19개¹⁷⁾ 폐

16) (수도권)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 부족 → 처리시설 신설 난망(부지확보 등) → 폐기물 적치, (비수도권) 기 구축된 처리시설 영업 손실 → 고의부도 및 불법·방치 이슈로 전이 우려

기물 관련 협회는 시·도별 폐기물 처리를 강제할 경우 사적자치의 원리와 영업 및 계약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배출자는 이미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반입협력금과 중복의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17) 한국폐기물협회,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대한타이어산업협회, E-순환거버넌스, 한국건설자원수집운반협회, 한국건설자원협회, 한국건축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한국목재재활용협회, 한국석유재활용협회,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한국음식물RFID종량기협회, 한국자원재활용협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한국환경에너지공학회 등

3. 폐기물처리시설 확보·정비 기본계획 수립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정비 목표와 기본방향,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노후 및 사용 종료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4조의2(폐기물처리시설 확보·정비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2. 폐기물의 발생·처리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전국 및 시·도별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요 및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노후 및 사용종료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정비를 위한 재원조달계획

현행	개정안
	6.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¹⁸⁾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정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순환경제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¹⁹⁾, 현행법에서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순환경제기본계획”과 별도로 폐기물처리시설에 특화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일견 타당하다고 보여짐.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순환경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기본방침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

3. 순환이용의 활성화와 폐기물의 적정 처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확보계획

6.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⑦ 생략

19) 이에 따라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이 현재 시행 중이며, 동시에 2028년부터 적용될 “제1차 순환경제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음.

첫 번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既시행중인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기본계획에서 규정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정비 목표와 방향, 폐기물의 발생·처리 현황 및 전망, 전국 및 시·도별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방안 등의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²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차 순환경제기본계획” 수립시에도 폐기물 발생 현황·전망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정비 계획을 담은 계획인바, 동일한 내용의 기본계획을 중복으로 수립하는 것은 행정적·재정적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과 개정안의 내용 비교]

개정안		자원순환기본계획
1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정비 목표와 기본방향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향후 추진 방향 및 시설별 세부 확충·투자계획) - 내구 연한 도래 및 매립기간 종료에 따른 투자계획 수립 (향후 10년간 총 32,537억원 투자)
4호	노후 및 사용종료된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호	자원조달계획	
2호	폐기물의 발생·처리 현황 및 전망	-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분석
3호	전국 및 시·도별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요 및 확보 방안	- 폐기물처리시설 전국 현황 및 운영실태평가

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정비 한정함.

자료: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20) 참고로, 중복제도 운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2018년 1월 舊「자원순환기본법」(現「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제정하면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및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폐기물 통계조사 등 「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되는 제도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삭제한 바 있음.

두 번째로, 사업장폐기물은 기본적으로 처리 의무가 배출자에게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은 배출자가 스스로 갖추거나 민간 주체의 투자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국가가 기본계획으로 그 설치·운영계획을 일률적으로 수립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민간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 현황(2023년)]

(단위: 개소)

구분	자가처리시설		중간처분업체 (소각)	최종처분업체 (매립)
	소각	매립		
민간	95	32	74	36

주: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은 사업장일반,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 처리업체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도 민간 시장에서 결정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안을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분리 및 폐기물 중간·최종 처분업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

개정안은 현행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 및 폐기물 처분업등으로 분리하고, 폐기물 처분업등을 할 수 있는 주체를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 이상인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자로 제한하고자 함(안 제25조 및 제25조의5).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 ① -----수집·운반·재활용을 업(이하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재활용업은 제외한다)----- ----- ----- ----- ----- -----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	② -----

현행	개정안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u>폐기물처리업</u>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 4.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u>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u>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 ----- ----- ----- -----. 1. <u>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u>----- ----- ----- ----- 2. ~ 4. (현행과 같음) ③ -----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 ----- ----- ----- ----- ----- ----- ----- ----- ----- -----.

현행	개정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u>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⑤ <u>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u> 2. <u>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u> 3. <u>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u> 4. <u>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u>	④ ----- ----- ----- -----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 ⑤ <u>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u>----- ----- --.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을 함께 하는 영업 5. ~ 7. (생략) ⑥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의,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2. ~ 4.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⑥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5조의5제2항 각 호-----제5항 제1호----- -----. ⑦ -----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 -----. ⑧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의-----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자-- ⑨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자-----

현행	개정안
1. ~ 6. (생략) ⑩ 의료폐기물의 <u>수집·운반</u> 또는 <u>처분</u>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⑪ ~ ⑬ (생략) ⑭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생략) 2.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u>폐기물처리업</u>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u>폐기물처리업</u>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⑮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 1. ~ 6. (현행과 같음) ⑩ -----<u>수집·운반</u>----- ----- ----- -----. ⑪ ~ ⑬ (현행과 같음) ⑭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u>----- ----- 3. ----- --<u>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u>-- ----- ----- ⑮ ----- ----- ----- -----

현행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u>폐기물처리업</u>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⑯ (생략) ⑰ <u>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u>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u>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u>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u>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u> 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신설>	----- -----<u>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u>----- ----- ----- -----. ⑯ (현행과 같음) ⑰ <u>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u>----- ----- ----- -----. <삭제> 2. ----- -----<u>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u>----- 3.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 제25조의5(폐기물 처분업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u>중간처분, 최종처분, 종합처분 및 유해재활용을 업(이하 “폐기물 처분업등”이라 한다)으로 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u>

현행	개정안
	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인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폐기물 처분업등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 처분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 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방법 2.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 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

현행	개정안
	<u>으로 최종 처분하는 방법</u> 3. <u>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 처분 시설 및 최종처분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등의 중간처분과 최종 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u> 4. <u>유해재활용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유해성 등에서 제1호의 폐기물 중간처분업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u> ③ <u>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허가신청, 폐기물 운반, 명의대여 금지, 준수사항, 변경허가 등에 대해서는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8항, 제9항,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기간 중 “2년”은 “3년”으로 한다.</u>

현행법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폐기물처리업”으로 규정하면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그 외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업종	영업 내용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장소로 운반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 폐기물 중간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중간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영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최종재활용업을 함께하는 영업

자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과 폐기물 처분업등으로 구분하고, 폐기물 처분업등의 경우에는 공공성 있는 주체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견 타당성이 인정됨.

[현행법과 개정안의 업종 구분 비교]

현행	업종	개정안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유해재활용업 ²¹⁾	폐기물 처분업등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폐기물 처분업등에 대해 민간업체의 시장진입 자체를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①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② 폐기물의 종류나 위험도와 무관하게 민간업체의 진입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²²⁾가 있고, ③ 이미 전국 123개소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이 운영중인 바, 이들 폐기물처리시설의 강제적인 사업 종료 및 다른 직역으로의 이동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²³⁾.

[전국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현황(2023년)]

소각시설	매립시설	의료소각	계
74개소	36개소	13개소	123개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둘째, 현행 폐기물 처리시장은 1987년 「폐기물관리법」 제정시부터 40여년간 정착·운영되어 왔으며 민간업체가 소각·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처분시설 설치·관리기준 기술검토, 폐기물처분계획서 및 환

21) 개정안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유해성 등에서 폐기물 중간처분업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SRF(폐플라스틱) 소각, 시멘트 소성로, 납 2차 제련시설 등이 포함됨.

22) ① 현행법에서 업종 적합성을 확인받도록 의무규정이 있고, 위반시설에 대한 영업정지·과징금 등 제재수단을 두는 등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보호하는 기존의 보호장치를 넘어 모든 폐기물 처분업등을 일괄적으로 공공기관에 한정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안전성, 공공성)이 침해되는 민간의 사익(직업선택의 자유 등)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과, ② 공공기관의 독점으로 인한 효율저하, 처리역량 부족, 비용 상승 등의 우려도 상존한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음

23) 법무부도 동일한 의견을 제출하였음.

경조사서 적정 여부 검토, 진입도로·상수원 이격 현지조사 등 강화된 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이 사업장폐기물의 99.1%를 처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폐기물 처분업등의 수행주체를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처리 능력의 한계로 폐기물 처리단가가 상승하고 불법 폐기물 적치가 증가하는 등 오히려 폐기물 처리의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우리나라 폐기물의 공공 및 민간 처리 현황 비교]

폐기물 종류		공공		민간		계	
		처리량 (만톤)	비율(%)	처리량 (만톤)	비율(%)	처리량 (만톤)	비율(%)
합계		1,183	6.71	16,438	93.29	17,621	100
생활	가정생활	1,040	62.31	629	37.69	1,669	100
사업장 폐기물	비배출시설계	25	4.37	547	95.63	572	100
	배출시설계	112	1.35	8,215	98.65	8,327	100
	건설폐기물	5	0.08	6,433	99.92	6,438	100
	지정폐기물	1	0.16	614	99.84	615	100
	계	143	0.9	15,809	99.10	15,952	100

자료: 「2023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기후에너지환경부,

아울러 민간업체가 담당하던 물량을 모두 공공기관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구축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현행법상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처리 정도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

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²⁴⁾.

셋째, 개정안에 따라 업종을 분리하는 경우, 현행법 전반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법문 및 내용 정비도 함께 필요함.

개정안은 현행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과 제25조의5에 따른 ‘폐기물 처분업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포함된 규정 외에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제18조),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결격 사유(제26조) 등에서 여전히 폐기물처리업 전체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이들 내용도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과 폐기물 처분업등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각각 규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업 내용을 포함하는 주요 조문]

조	주요내용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가능
제25조의3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로 유효기간 내에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함
제26조 (결격 사유)	- 미성년자 등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음
제27조 (허가의 취소)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규정

24) 이에 더하여 사업장폐기물은 그 종류와 처리기술이 다양하고, 새로운 소재 및 기술의 개발에 따라 성상이 계속 변화하기에 폐기물 성격에 큰 변화가 없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장폐기물 처리기술 개발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조	주요내용
제28조 (과징금 처분)	-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승인 규정
제32조 (다른법령에 따른 의제)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의제
제33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 폐기물처리업의 양수·양도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규정
제36조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에 관한 장부 기록 의무
제37조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 폐기물처리업자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시 신고의무
제38조 (보고서 제출)	-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발생·처리 보고서 제출 의무
제39조의3 (폐기물 처리명령)	- 허가취소·영업정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제40조 (방치폐기물 처리)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 명령 및 방치폐기물 조치
제41조·제42조 (폐기물처리 공제조합)	- 폐기물처리업자는 조합을 설립하고 공제사업등 실시
제64조·제65조 (벌칙)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등에 관한 벌칙

또한 개정안에서는 현재 폐기물의 매립·소각 등 폐기물 처분업등을 영위하고 있는 민간업체에 대한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아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위법행위자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민간업체의 영업행위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이 사업장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오염자 책임원칙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국가·지자체의 재정 부담 및 기존 민간업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나주시는 사업장폐기물 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등 신규 시설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 공공성이 보장된 주체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19개 폐기물 관련 협회는 폐기물 처분업등을 공공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존 민간업체의 업역을 침해하고 처리단가가 교란될 수 있으며,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과거 공공매립장을 민영화한 사례가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36

※ 참고자료 1: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연간 발생량 및 처리업체 현황

① '23년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

(톤/년)

구 분	계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계	153,972,467	83,264,064	64,374,216	6,130,175	204,012
재활용	138,346,150	70,287,553	64,138,463	3,920,100	34
소각	4,531,335	3,365,504	148,851	819,790	197,190
매립	6,484,337	5,377,260	86,902	1,020,175	0
기타	4,610,645	4,233,747	0	370,110	6,788

②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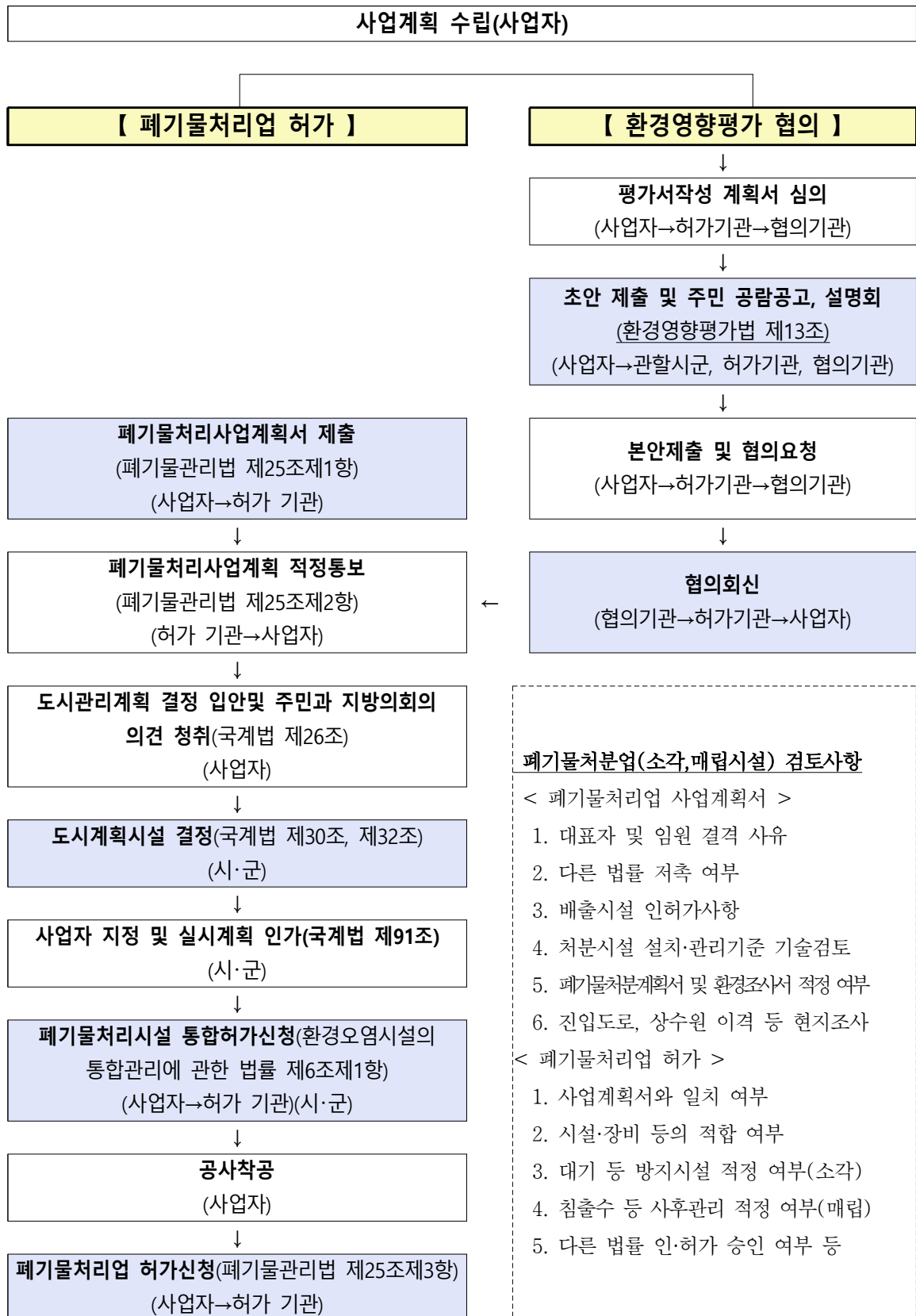
(개소)

구 분	계	사업장폐기물*	의료폐기물	건설폐기물
계	6,722	6,115	16	591
재활용	6,595	6,001**	3	591
소각	902	77	13	-
매립	37	37	-	-

*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는 지정폐기물처리업체와 일반폐기물처리업체

** 사업장폐기물 중간재활용업 1,387개소, 최종재활용업 191개소, 종합재활용업 4,423개소

※ 참고자료 2: 소각·매립시설 인·허가 절차



※ 참고자료 3: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목차

I. 자원순환기본계획 개요	1
II. 현황 분석	3
1.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4
2. 자원순환 정책 성과 평가	21
3. 국내·외 자원순환 여건 및 동향	25
III. 자원순환정책 추진방향	38
1. 비전 및 전략	39
2. 정책 추진방향	40
3. 자원순환 지표 설정	41
4. 이해관계자별 역할	42
IV. 단계별 세부과제	43
1. 생산단계	44
2. 소비단계	56
3. 관리단계	67
4. 재생단계	80
V.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94
VI. 소요재원	111
붙임: 과제별 소관부처	114